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37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서삼석・윤준병・임미애
이재관・김정호・조계원
박용갑・문금주・신정훈
김태년・이정문・양부남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하며,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대학동물병원이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연구·공공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대학동물병원이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수련·연구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진단 등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8조).

바.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고,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고 임명 절차 및 권한,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여 대학동물병원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12조).

아. 임상교육·진료·연구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의 병원 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등 교육·연구 연계 기반을 마련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가축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대학동물병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통하여 수의학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 및 공중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학동물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대학동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대학동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대학동물병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 ① 대학동물병원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동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6조(대학동물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대학동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동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대학동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대학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학 교육을 위한 임상실습 및 교육 지원

2.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3. 수의학 관련 연구 및 융합 학문의 교육·연구

4.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

5.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진단 지원

6. 공중보건 향상과 유기동물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대학동물병원의 책무) ① 대학동물병원은 동물에 대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수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의 교육·수련과 수의학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동물병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검역·방역 및 진단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9조(임원)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은 그 대학의 총

장으로 하고,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은 그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해당 대학동물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수의과대학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해당 대학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④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수의학 및 공공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대학동물병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학동물병원장) ① 대학동물병원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인 병원장 1명을 둔다.

②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병원장은 대학동물병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병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동물병원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및 재정

제13조(직원) ① 대학동물병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육·진료 및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련대학 소속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는 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의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비등의 지원 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동물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교육·연구 및 공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수의료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

2. 공공 수의료 및 방역 관련 진료 수행에 드는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동물병원이 자체 임용한 임상교육·진료 및 연구 인력과 전공의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7조(회계연도) 대학동물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감독 및 보칙

제18조(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병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 및 결산

제1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동물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동물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동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대학동물병원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동물병원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대학동물병원이 승계한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